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75
----------	-----

2025. 3. 21.(금)
행 정 문 화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오영탁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 다.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 라. 상정일자 : 2025년 3월 13일
 -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오영탁 의원)

가. 제안사유

-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야간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발굴하여 충청북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활성화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

함(안 제5조)

-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사무의 위탁 근거와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신복순)

-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야간관광 자원의 개발 및 발굴을 통해 충청북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체류형 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필요한 시책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5년마다 기반 조성, 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포함한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활성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야간관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주간 관광 중심의 기존 관광산업 정책에서 벗어나,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숙박·요식업·문화 소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야간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임.

-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청북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또한, 도지사의 책무, 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야간관광 상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홍보·마케팅 등의 정책적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야간관광 활성화의 실질적인 추진력을 확보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야간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음.

4. 질 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관광객이 지역 내 관광명소, 문화·예술행사, 축제, 유적지, 편의시설 등을 방문하거나 체험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한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체험, 문화예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계획
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야간관광 홍보 및 마케팅 전략
5.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 방안
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야간관광 현황 및 대상지, 수요 분석 등에 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야간관광 상품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3. 야간관광과 연계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야간관광 홍보·마케팅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
5.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기획·운영
7. 야간관광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2. 야간관광 사업 추진 및 평가
3. 야간관광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야간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관광산업, 야간관광,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